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대가야박물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

제출일자 : 2021.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대가야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관람료 징수관리 및 운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10조의 관람료 면제 부분을 신설
- 나. 조례 제11조의 박물관자료복제 이용료 부분 추가
- 다. 조례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췌 : 별첨과 같음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1.11.3.~2021.11.23. 기간 중 의견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마. 규제영향분석 결과 : 해당없음.
- 바. 기타 관련사항 : 해당없음.

※ 신설 사유

-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6393(2020.6.10.)호와 관련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요청 반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익년**”을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중전의 제7호)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12.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제11조제1항 전단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중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할 이내”를 “2할 이내”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③ 그 밖의 수장품 관리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p> <p>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그밖</u>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할 수 있다.</p>	<p>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u>----- ----- 받아 -----.</p>
<p>제8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11월 1일부터 <u>익년</u>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p> <p>② (생략)</p> <p>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u>제2항의</u>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다음 해</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제2항</u>----- ----- ----- -----.</p>
<p>제9조(관람료) ①·② (생략)</p> <p>③ 징수한 관람료는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u>아니하고</u> 환불을 요</p>	<p>제9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않고</u> -----</p>

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 5. (생략)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의 면제) -----

1. ~ 5. (현행과 같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신 설>

7.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9. (생략)

제11조(박물관자료 복제) ① 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령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4.11.17.>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2.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

14.·15.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11조(박물관자료 복제) ① -----

수입증지, 고지서-----.

② -----

----- 발급-----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의 제한) -----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2. (생략)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생략)

②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수장품의 수집) ① (생략)

② 관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이내에 해당하는 기

-----.

1. -----
-----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2. (현행과 같음)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장품의 수집)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세워야-----
-----.

③ -----
-----.

--- 2할 이내-----

증사레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2004.11.17.>

④ (생략)

제16조(수장품의 관리) ① 수장품
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타 수장품 관리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 규
정」을 준용한다.

제17조(편의시설 등)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령군 공
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
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① -----
-- 대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수장품 관리에 대하여
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
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편의시설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다른 사람 -----
-----.

제19조(시행규칙) -----
필요한 -----
-----.

< 소관 부서명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연 락 처	054-950-7104

관 련 법 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 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